

고 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제2023-47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인천검단 AA18-2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976호(2019.1.7.)로 승인 고시된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A18-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19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인천검단 AA18-2BL 공공주택건설사업(국민임대·영구임대)
2. 사업시행자
 - 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관
 - 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3. 사업시행지역 :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,당하동,불로동,마전동 일원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A18-2BL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 - 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
 - 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(주택유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)
5. 기 타 :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·고시하지 아니함